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 현대화

세부사업명	원예시설현대화	세목		단체자본보조, ·민간융자금						
내역사업명	특용작물(인삼)생산시설현대화 예산 (백만원) 2,896									
사업목적	○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,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									
사업 주요내용	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, 무인방제시설, 점적 관수시설, 방풍망 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 등 지원		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○ 인삼산업법 제3조 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		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○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(하려는) 농업경영체 ○ 무인방제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○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또는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(GAP,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)									
지원한도	○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: 개소당 2ha이내(50백만원/ha) ○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: 개소당 2ha이내(180백만원/ha) ○ 무인방제시설 : 개소당 2ha이내(15백만원/ha) ○ 인삼 점적관수시설 : 개소당 2ha이내(8백만원/ha) ○ 인삼 이식기·파종기·수확기 : 대당 5백만원 이내									
재원구성(%)	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									
							(단위	(단위 : 백만원)		
	구 분	2018년	2019년		2020년		2021년			
연도별	o 합 계	6,191	7,421			7,421		7,421		
재정투입	- 보 조	1,510	1,810			1,810		1,810		
계획	- 융 자 - 지방비	906 2,265	1,086 2,715			1,086 2,715		1,086 2,715		
	- 자용비 - 자부담	1,510	1,810			1,810		1,810		
	* 융자예산은 실집행율(40%)을 감안하여 편성									
담'	당기관	당과 당당 담당기 당당기 당당기 당당기 당당기 당당기 당당기 당당기 당당기					<u></u> 란처			
농림축	· · · · ·	원예산업과			<u></u> 박태			044-201-2238		
	·도				주무관 김선이 인삼산업 담당자			044-201-2239		
신청시기	사업대상자 : '20	0년 2월 15일까?	۲		시행기					
관련자료		를 : '20년 2월 밀 스템(AGRIX) 사입		니 디침서						
	ㅇㅁ끿ㅂㅇㅗ시	— =(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⊒~10^	1 D (1						

I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(이하 농업경영체)
- 농업인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
- 농업법인 :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
- 생산자단체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제3조제4호

[지원제외 대상자]
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
-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(하려는) 농업경영체
 - GAP(친환경 포함) 인증(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),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 경영체 우선 선정
 -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
 - *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
 - *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
- 무인방제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 - *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
-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또는 GAP(친환경 포함)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(GAP,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)
 - GAP,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% 지원

3.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

- 지원대상 :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, 무인방제시설,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
 - *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
 -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」고시 설계도·시방서에 따라 설치(농림축산식품부 고시: 제2019-44호, 2019.8.23)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다만,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 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(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)
 -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(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)
 -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. 다만,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·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
- 사용용도 :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(지원조건)

- 자금의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20%, 국고융자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- 융자조건 : 연리 2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- 융자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업금융부)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: 개소당 2ha이내(50백만원/ha)
-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: 개소당 2ha이내(180백만원/ha)
- 무인방제시설: 개소당 2ha이내(15백만원/ha)
- 인삼 점적관수시설: 개소당 2ha이내(8백만원/ha)
 -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

- 방풍망시설: 개소당 2ha이내(6백만원/ha)
- 야생동물방지시설: 개소당 2ha이내(5백만원/ha)
- 도난방지시설 : 개소당 2ha이내(10백만원/ha)
- 이식기·파종기·수확기 : 대당 5백만원 이내(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)
 - *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
 - * 다만,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(견적서, 원가계산서) 등 구비
 - * GAP(친환경 포함)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%만 지원

6. 유의사항

○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 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

(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)

-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·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 예정지 관할 시·군에 신청(※단,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)
- 사업비 집행·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,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
-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, 지역실정 등을 감안, 지자체장이 검토·결정하여 시행

Ⅱ / 사업추진체계

1. 사업신청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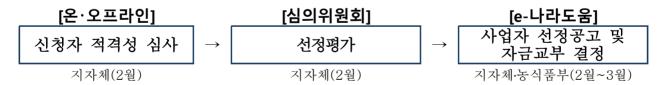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부

- 시·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('19. 10월)
- 지원조건, 지원자금의 사용용도, 사업신청 절차·방법, 세부계획 수립·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에 시달('19.12월)
- 시·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('19. 1월)

농업경영체

-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· 군에 제출('20.2.15일까지)
-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
- 농업경영체는 GAP(친환경 포함) 인증서,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
 - *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(또는 인삼경작신고서)를 제출
 - * 인삼경작확인서(또는 인삼경작신고서)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추가 제출

2. 사업자 선정단계



지자체

- 시·도지사는 시·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(2월말)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·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·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자금교부 결정(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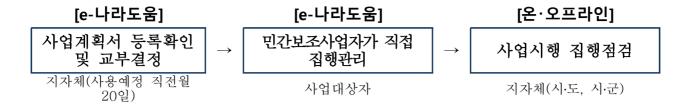
-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,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
 -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

3.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

지자체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하는 등 시·도(시·군)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·추진
 - 시·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(3월말),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
-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(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, 종합물가정보, 원가 계산서 등)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·군수가 검토 후 결정
- 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토록 조치(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)
 -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·공지
 -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
 -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·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
 -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,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(선정업체 및 하청업체)

4.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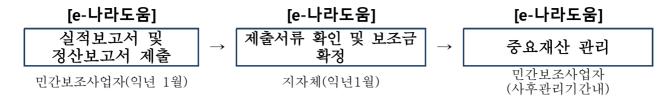
지자체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」등 관련법령과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제53조 「사업자금 집행의 원칙」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,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운용규정」등 절차 이행
 -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(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)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 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, 지원비율 준수 여부,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

농협중앙회

○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·도지사(시장· 군수)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

5. 이행점검단계



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(시·도)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
 -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
-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·감독 철저

사업비 검정 및 정산(시·도)

-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·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
- 시장·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
 - 사업비 집행(인건비, 자재구입 등)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(무통장 입금표, 통장사본, 신용카드 등)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(현금 거래 불가)
- 시장·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·결산하여 결과를 시·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, 시·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6. 사후관리단계

○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·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(사업의 관리책임 등)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○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·제16조에 의거 관리

ગો ત્રી છે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 기준					
재산명	부터	까지	시 시 선생 인 기 선생 기 선생 기 선생 기 선생 기 선생 기 선생					
			o시장·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					
- 건물 및 부속설비	준공일	10년간	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					
			관리를 하고,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					
	구입일	5년간	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·용도					
- 주요기계 장비·자재			변경・양도・교환・대여・담보제공을					
			할 수 없음					

*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시업관리 기본규정」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, 금융기관(농업보조금 취급기관)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

<제재 및 처벌내용>

사업관리주체(시·도)

○ 시·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

자금관리주체(농협)

-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
 -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
 -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
 -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
 -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

Ⅲ 평가 및 환류

1. 사업 성과지표 측정

-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·평가
 - 인삼농협, 인삼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

2.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

- 시·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'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('20.6월말)
- 신청절차 : 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농림축산식품부
- 신청기간('21년 사업): '20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
 - * 시·도(시·군)에서 수요조사 후 '20년 6월까지 공문 제출

〈붙임 1호 서식〉

<u>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</u>

	주	소										
신청인	성	명			생년	크월일						
	_ _소	속		저형	화번호		TEL					
	소 속 (법인 등)						H·P					
사 업 예정지	소지	시지		외 필지(별지 기재)								
인 삼 재배현황	재배면적 합 계		4년근	5년근				6년근				
재배현황	m²											
사업신청	세브샤	나 업명	사업량 (m²,m,공)	지원단가 (천원)	사업비(천원)					비고 (융자 희망 여부)	GAP, 친환 인증 여부	
	" '				계	국고	지방비	융자	자부담	희망(여부)	인증 여부	
>												
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)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. 20												
							청자 ⁻ 명	주 소	(인)		
○○○시장·군수 ·구청장 귀하												
첨부서류 1. 사업계획서(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) 1부 2.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(토지대장, 지적도,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) 3.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										정보)		

<붙임 2호 서식>

특용작물(인삼)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

□ ○○도

(단위 : m², 톤)

												(단위 : m², 톤)
순 위	성	명	주	소	인 삼 재배면적	시 설 설차계획		사업	비 고 (세부사업명)			
위	0	; o	Т				계	국고	지방비	융자	자부담	(세부사업명)
-												

- *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
- * 순위는 각 시·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